

감사위원회규정

2022. 4. 21.

SK 바이오팜 주식회사

제 정: 2019. 8. 19.
개 정: 2021. 4. 21.
개 정: 2022. 4. 21.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,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감사위원의 사임,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 인으로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중 선임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제 6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최초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2 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7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·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기능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보유한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
 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- 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- 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- 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5)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3. 감사에 관한 사항
 - 1) 업무·재산 조사
 - 2) 이사 및 이사가 위임한 자의 보고 수령
 - 3) 이사(단,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와 회사 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
 - 4) 위원과 회사 간 소송에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 선임 청구
 - 5) 외부감사인(이하“감사인”)의 선임 및 변경·해임·보수에 대한 결정
 - 6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 - 7)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
 - 8) 연간 업무감사 계획 검토 및 승인
 - 9) 연간 업무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, 승인 및 피드백 제공
 - 10) 내부감사업무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
 - 11) 내부통제시스템 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- 12)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 - 13) 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- 14)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15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

- 16)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
 - 17) 내부 감사 관련 주요 규정 및 절차 제·개정 검토
4.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

제 9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 자료의 제출 및/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무)

- ①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간사 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 조직은 재무본부 및 지속경영본부로 하되, 회계 및 재무와 관련된 부분은 재무본부가, 업무 감사, Compliance 등 그 외의 부분은 지속경영본부가 주관한다.
- ② 간사 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간사 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 작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사후 승인)

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4 조 (감사의 실시)

-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위원회는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.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 1. 거래기록의 신뢰성
 2.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
 3.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
 4.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
 5. 회계방침의 계속성
 6.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
-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외부감사인 선정 등)

-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,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,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

부여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을 문서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감사록)

- ① 감사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감사록 작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7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19. 8. 27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